

조경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신익순* · 구본학** · 변재상***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A Basic Stud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Shin, Ick-Soon* · Koo, Bon-Hak** · Byeon, Jae-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of the tentatively-named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as an umbrella law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regarding legal, industrial, and academic aspects and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the optimal legal system and legislative proceedings to control it.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form of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is appropriate for a compromise between ideal type and political framework. Some content is suitable for proclamatory character including present and future issue related to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s.

Second, legislative proceedings are more reasonable as motions coming from assembly proposals rather than government. Motions by assembly proposal recommend the following procedure: submission of a legislative bill by an assemblyperson, passing of a permanent commission, review by government, leading approval by emphasis on correspondence with the principle to carry out government affairs, proclamation.

Third, a frame based on content and form can be made up of a total of 7 chapters 34 articles. The function must include the following: the suggestion of direction for government policy, the systematization of the institution and what it includes, the contro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 public service system regarding public relations for landscape architecture and so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necessity of a framework act regarding landscape architecture fields and contribute to informing the importance of landscape architecture as related to other industrial fields.

Key Words: Landscape Architecture Policy, Construction Regulation, Architecture Act

[†]: 이 논문은 2008년도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ae-Sang Byeon, Dept. of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Shingu University, Seongnam 462-743, Korea, Tel.: +82-31-740-1537, E-mail: drbyeon@shing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범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절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조경정책, 건설법규, 건축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조경산업은 건설환경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추구하고 환경과의 공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와 국제정치적 'globalization' 상의 환경보전 등의 행정업무에서 조경분야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상황이다. 조경공사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는 특수한 건설공사 분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경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경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규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개발과 보존의 양립성을 추구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외부환경과 경관을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이 필수적이거나 이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법체계가 없이 각종 개발행위들이 여러 법규들에 의해 제지됨으로 인해 조경분야의 전문성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문제의 극복에 국제

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발과 보존의 매개자로서 조경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조경분야의 높아진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 조경인들은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경인들의 전문영역 확보와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은 국가적인 변화와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는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지 못하였으며, 과거의 모습만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분야의 높아진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경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¹⁾. 조경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초기 공원녹화사업부터 시작하여 현재 생태복원과 경관사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여러 개별법 형태로 산재되어 조경활동에 대한 근거만 제시할 뿐, 일관성 있는 총체적인 지원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으므로, 결국 조경분야가 산업적인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관련 분야와의 마찰은 다름 아닌 조경분야를 규정할 모범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범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경분야 모범탄생을 위한 구체적 준비단계로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조경 비전공인인 일반국민들에게도 조경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조경의 정체성을 알리고 대외적인 홍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법제정 추진 시 제정주체들, 예컨대 국회의원이나 관련 행정관료 등에게 법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조경 분야의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국가적인 조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경법제도 연구사

1. 조경 관련 법제도 일반

제도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경법 관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유직(1992)은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 측면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오회영(1983)은 조경분야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초까지 조경분야 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조경 관련 제도와 법령에 관해서 검토한 바 있다. 신익순(1996b)은 조경과 관련된 민법상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우현영(1994)은 공향녹지 및 배후지 원단지의 공원녹지를 위한 관련 법제를 기본법규²⁾와 주요 관련 법규³⁾로 나누어 검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대우(1976)는 공원정책과 법 및 공원 내 법적·제도적 규제 내용을 종합해 법적 측면에서의 오픈스페이스 규제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관련 법규의 검토에서 기본법규⁴⁾와 주요 관련 법규⁵⁾로 나누어 검토한 김문모(1990)의 연구도 있다. 박윤진(1996)은 도시공원녹지 관련 법규를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다루는 법규와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하천법 등과 같은 비도시계획시설을 다루는 법규로 구분하였으며, 신익순(1996a)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개발 시 야기될 법제도적인 문제를 미리 예측해 보기도 하였다.

1999년 도시계획법, 도로법, 건축법 등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입체도시계획의 개념⁶⁾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입체도시계획 관련 법제도를 국내 및 국외에서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시한 연구(이학동 등, 2000; 정종대 등, 2005)와 도시 내 공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입체도시공원⁷⁾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송지영과 김세용, 2008)가 있었다.

신익순(1999)은 정부기관 내 조경직 설치에 따른 법리와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안상욱(2003)은 2003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⁸⁾상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조경·환경분야의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기존 도시공원법이 2005년 10월부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의 틀을 넘어 새로운 계획개념과 적용범위가 생김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고, 향후 예측되는 변화에 대한 정책 및 선결과제 등을 제시한 연구(박문호, 2006; 김한경, 2006)와 개정된 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본의 녹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강명수, 2005)도 있다.

이외에도 도시화로 인하여 산림 및 도시지역 내의 녹지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녹지보전을 위한 통합적 녹지관리수단으로서 녹지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관련 국외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의 녹지총량제 적용방안을 제시한 연구(최재용 등, 2008)가 있으며,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국외 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의 적용방안을 토지이용계획, 단지 및 대지계획, 건축물 계획으로 나누어 도시열섬현상 방지수단인 조경영역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하는 연구(서응철, 2007)가 있다. 2007년 11월부터 시행이 된 경관법의 경우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관법 관련제도를 고찰한 연구(오민근, 2008)와 조망권의 법적인 장치로서 경관법을 고찰한 연구(박진근, 2008)도 조경과 관련된 법제도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조경독립법 제정

신용모(1987)는 국내 조경분야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인류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법령의 측면에서 조경 관련 법령을 보완·정리하여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조경법(독립법)의 제정에 관한 방향설정 및 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익순(1993; 2001)은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조경 관련 법규의 정비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김학범(1986)은 조경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개관하고, 조경분야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은 물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경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경 관련 독립법(특별법)의 제정, 설계용역 관련 법규 및 공사시공 관련 법규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바 있다.

3. 조경업무 관련 법제도

오정학(1993)은 대도시 과밀 건축물 주변 소공지 즉 자투리 땅의 조경계획과 관련된 서울시 도심지 건축 관련 법규⁹⁾를 검토하였으며, 정하광(1995)은 조경과 관련된 계획·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신익순(2004)은 생태복원업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시공의 핵심사항인 재료에 대한 제반 통제규정을 법률적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실정법과 판례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 속성을 분석하였으며, 김평 등(2007)은 대지안의 조경에서는 조경면적 확보만을 규정하여 세부적인 지침 없이 도시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의정부시를 사례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조경설계 및 식재, 유지관리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조동우(2006)는 2002년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경설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생태면적률 제도기준에 따른 적용방안 연구(임만택, 2006)와 생태면적률 적용을 위한 포장재 성능을 분석한 연구(한승호와 강진형, 2006)가 있으며, 부족한 도시에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옥상녹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 옥상녹화 공법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남선영과 윤재욱, 2008)도 있었다.

한국의 조경 관련 법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그 정체성 확인과 구체적인 검토과정에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의 타 조경분야보다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현 조경업역에서의 계획, 설계 분야와 최종적 성과물인 식재물이나 조경시설물들을 조성하는 실무진들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틀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법규정 적용시 융통성의 결여로 획일화된 규정에 얽매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타 건설 분야인 건축, 토목, 도시계획 분야 등의 관련법에 귀속되어 운영됨에 따라 현실적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도시열섬현상 완화, 도시미관 향상, 녹지의 활용가치 상승 등 사회적 요구 및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조경분야가 가지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더불어 조경의 위상도 높아졌으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 타 분야로 종속되어 조경계 전반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조경의 범위에 속하던 업무들을 타 분야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2007년도에 이르러 공무원 조경직제가 신설 및 운영되고 있어 조경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타 직제와의 명확한 업무분야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제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과학분야이므로 자연과학자인 조경전문가로서의 그 접근의 거리감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조경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내용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특히 조경 관련 법조문 분석과 같은 법이론적 측면의 접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방대한 양의 법규 검토 및 관련 문헌조사와 이를 통한 관련 법률과의 상충성 등을 검토한 후, 기존 법률과 기본법의 틀 속에서 최대한 조경기본법의 형식과 내용적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실정법을 대상으로 조경관련법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 분야의 일종인 조경분야 법률제정에 예상되는 각종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조경의 정체성에 대한 소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조경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조경관련 법규들의 현황 및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내 기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현행 실정법 예컨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기본법의 개념과 의의 및 성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법제적, 조경적, 학제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앞선 결과들에 기초하여 조경기본법이 지녀야 할 형식적, 내용적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실질적인 연구 결과의 구현을 위해 조경기본법의 입법 절차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현행 법률 제정 절차와 건설 분야 법률제정 절차를 고찰하여 실효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다양한 법규 및 연구들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고찰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도출된 조경기본법 및 시행령 시안 역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정이므로 본문에는 수록치 아니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경기본법의 필요성 및 관련 이론 고찰¹⁰⁾

1) 조경의 정체성 고찰

조경의 정체성 고찰에서는 조경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학문적, 해석적, 법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학문적으로나, 여러 전문가적 해석에 따라 자연, 인간, 토지 등의 공통적인 키워드들을 내포하고 있었다(권상준 등, 2001; Eckbo, 1969; 김영대, 1999; 임승빈과 주신하, 2006; 고정희 등, 2007). 그러나 대상이나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지 않아 법적 적용상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법적 의미는 실정법과 행정법규로 구분하여 검토를 하였는데, 실정법에서 조경과 관련 있는 법규는

87개, 조항은 128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경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법규가 현존하지 않아 서로 상충됨으로써,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규에서는 현행 '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중심으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조경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이 기준들이 조경의 활동영역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격, 행위(설계와 시공 등), 대상, 기준, 설치, 재료, 시설, 식재, 관리, 생태복원 등 다양한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들이 서술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최하위 법적 단계의 기준들이 법적 효력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칫 중복될 수 있는 타 분야와 차별성을 가진 상위단계의 법규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조경을 통제하는 법규가 하나의 체계로 묶이지 못한 채 여러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2) 조경법제도 이론 고찰

조경법제도 이론 고찰에서는 조경이 기존의 법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법과 조경의 관련성, 헌법 중 조경관련 규정, 민법과 조경의 관련성, 조경법제도 연구사 등을 검토하였다.

법과 조경의 관련성에서는 어의와 개념상에서 자연환경관리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경을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조경관련 법률의 유래는 관습법→형평법→법령의 과정을 거쳐 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경을 다루는 법규는 다양한 사회변화와 법제도 제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의 조경관련 법규는 허용과 유도적인 측면보다는 규제만을 위한 기능적인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인근 분야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지역과 국가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경영역이 독자성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헌법 중 조경관련 규정에서는 헌법상 조경의 지위, 헌법 중 조경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헌법조문별 조경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주된 헌법조문의 조경 관련성은 조경의 필요성, 주체성, 전문성, 의무성, 권리성, 사회공공성, 지역성, 종합관리성과 같은 조경의 법적 속성들을 연관시켜 해당 헌법의 조문을 근거로 서술함을 알 수 있었다.

민법과 조경의 관련성에서는 민법에서 다루고 재산법 분야에 조경의 연관성이 높았으며, 조경관련 특별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국내 조경관련 법규 현황 및 기본법 이론

국내 조경관련 법규 현황 및 기본법 이론에서는 현행 조경관

련 실정법, 기본법의 개념, 조경기본법의 의의 및 성격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행 조경관련 실정법에서는 관련 법규 개황을 통하여 조경분야가 실정법 분야로 포함될 근거가 충분하며 독립법 제정의 타당성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경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조경조례, 조경기술자, 조경계약, 조경계획 등의 분야별 항목도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신익순, 2001). 국내 기본법은 2008년 기준 114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기본법들이 해당분야의 근본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경분야의 근본법으로서 조경기본법은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의 성격을 가지며, 국토기본법, 건축기본법, 산림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4)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에서는 법제적 측면, 조경적 측면, 학제적 측면의 당위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적 측면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건설관련법규로서 조경기본법의 위상이 타 건설 분야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하는 근거를 살펴볼 수 있으며, 조경전문가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공무원 조경직제 현황에서 산발적으로 미약한 단계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조경적 측면에서 볼 때 조경을 주제로 하는 관련 사업들이 타 법률로부터의 제한되고 있으며, 타 분야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들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경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근거로서 조경업의 현재 산업적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12월 현재, 조경공사업은 1,012개 업체, 조경식재공사업은 2,532개 업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603개 업체 등으로서 조경설계업체를 제외하고도 거의 5,000여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계약실적도 2006년 기준으로 조경공사업은 2조 1,727억 원, 조경식재공사업은 2조 1,997억 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조 3,184억 원 등으로 총 5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비중이 건설분야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상석, 2008). 또한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도 명칭은 상이하나, 전국 232개 시·군·구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며, 공공부분 기업과 관련학회의 존재 역시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학제적 제정의 당위성으로 한국조경교육의 역사와 연도별 전국대학, 대학원 조경학과 설치현황 등의 차원에서 많은 수의 조경인력이 양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교육프로그램에서

는 타 분야 전공학과와는 다르게 법제도에 관한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 측면으로 볼 때 타 건설 분야와의 동등한 위상, 조경산업의 양적 질적 팽창, 조경인력 수요 증가 등의 변화된 조경의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피력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 및 문제점

현행 법률 제정 절차는 주요 법률 제정 주체에 따라, 정부입법절차와 일반 국회의원이 상정하는 의원입법절차가 있다. 조경기본법 입법을 위한 적정 절차의 제안을 위하여 우선 입법절차의 대안들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구분하여 장단점을 검토하였다(표 1 참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입법절차를 거치는 경우, 국회 심의 이전에 행정부의 사전 검증을 받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과 체계가 관련 행정기관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향후의 제정 단계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부 검증 단계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당초의 의도가 벗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률안 자체가 자칫 폐기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반면,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 과정 자체에서 조경기본법 제정의 의의나 당위성이 공론화가 될 수 있고, 언론과 관련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수월성으로 인해, 입법 후 건축, 도목, 도시계획 등의 타 법률과 많은 충돌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이후에 추진되어질 '조경법(가칭)'이나 '조경법시행령(가칭)' 등의 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기본법의 선형적 성격을 강조하여 도덕적 당위성을 여론 형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현 정부가 2008년 8월 15일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발과 보전의 절충영역으로서, 조경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표 1의 장단점을 통해 향후 조경기본법 입법과정 추진단계에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¹¹⁾. 결과적으로 입법절차 최종안은 의원입법 형태로서 기본법 고유의 특성을 담고, 정책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규정하며, 행정부처 간의 충돌 예방과 사안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조경기본법의 입법과정을 정리하면,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법률안 정부이송에서의 지속적인 설득→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법률 공포→법률의 효력발생 등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3. 조경기본법 제정 시의 기본방향

1) 조경기본법의 유형

기존의 기본법을 그 제정배경과 목적, 규정내용 등을 중심으로 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및 개혁추진형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상응하여 그 의의와 추구하는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표 2 참조). 각각의 기본법은 하나의 목적만을 가

표 2. 기본법의 유형별 분석(박영도, 2006)

기본법 유형	목적	관련 기본법
이념형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함(선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토기본법
정책형	행정분야별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측에 시책의 추진을 촉구함.	건축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건강장기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대책형	행정상의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추진형	국정 상 중요과제의 특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의 기본이념·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개혁프로그램을 정하거나 개혁추진을 위한 계획을 규정함(조치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표 1. 조경기본법 제정 시의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정부입법	1.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 2.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3. 현 정부의 정치철학과 일치하여 법률 제정 과정에서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함.	1. 타 분야 종사자들이 정부 단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법률안 기초단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2.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기본법의 방향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움. 3. 관련부처간의 내부 검토와 국회 심의이라는 2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자칫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음.
의원입법	1. 친환경 국토개발 및 조경의 공익적 의미와 기여도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의원 측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여야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추진된다면 객관적인 법률안 제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함. 3. 정부입법에 비해 소관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 발생이 조경기본법이 쟁점화된 이후에 벌어지므로, 국민의 관심속에서 소관부처 상호간의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안도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어 질 수 있으므로, 그 절차 및 제정 과정에 있어 마찰이 우려됨. 2. 국토해양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3.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관련 소관부처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초안의 내용이 많이 수정될 우려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음.

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국토기본법은 그 제정된 배경이나 목적에서는 대책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황이 변화된 현재에는 오히려 이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기본법은 하나의 유형이 아닌 복수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경기본법은 조경분야의 지도법으로서 기본적인 이념·원칙 등을 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에게 널리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언법의 성격을 띠는 이념형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 행정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조경정책·제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측에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정책형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글로벌 친환경 경시대를 맞이하여 조경기본법은 현재 종합적인 조경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선 새로운 이념과 가치 아래, 환경친화적인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조경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적 성격의 이념형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정책형의 유형을 가지도록 절충하여야 할 것이다.

2)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

(1) 형식적 기본방향

조경관련 입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기본법, 국토기본법, 산림기본법 등 총 30여개의 법률명과 규정내용을 살펴본 결과, 관련 기본법들의 기본적인 체계는 ① 이념 규정 단계에서 해당 기본법의 도덕적 당위성을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며, 국가 및 산업발전에서의 역할 등을 서술하는 형태로 기본 이념을 정의하고 있었다. ② 책무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의 책무에 대하여 언급하며, 해당 영역 혹은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③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주변의 관련 법률 및 타 분야에서의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며, 건축기본법과 같이 하위 법률인 건축법과의 관계를 통해 해당 기본법의 권위를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④ 기본적인 시책의 열거와 정부의 조치에서는 이념 규정 장에서와 유사한 성격의 언급들을 좀 더 구체화 시키는 단계로 볼 수 있었다. 즉, 선형적 성격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해당 장에서는 이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성과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본법의 당위성을 보다 강조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며, 관련 시책의 종류 및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화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었다. ⑤ 계획책정에서는 각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관광진흥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기본법의 구체화된 형태를 제

표 3. 조경기본법에서의 구성 체계 및 항목별 채택 유무

구성체계 항목	채택 유무	채택 유무 근거
1. 이념 규정	○	제정배경이나 조경정책의 방향성,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원칙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책무 규정	○	공익적 성격이 강한 조경 분야의 특성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필요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노력, 나아가 협력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무규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타법률과의 관계 명시	○	조경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산림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법률들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 향후 조경에 관한 개별법 제정에 앞서 지도법과 지침법으로서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해당 개별법들과의 위상 정립을 통해 일관성 있는 조경정책의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4. 기본적인 시책의 열거와 정부의 조치	○	조경기본법에서 제시한 시책의 종류를 기초로 정부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상·재정상·금융상 등의 지원을 통해 해당 시책의 원활한 진행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5. 계획 책정	○	조경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방침의 책정을 통해 행정계획으로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조경계획에 대한 책정은 공원이나 녹지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국토종합계획, 건축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임.
6. 국회에 대한 연차 보고	○	조경정책에 대한 동향, 정부가 강구한 조경시책, 연차계획 혹은 추구하려는 조경시책 등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조경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정부의 조경정책이나 시책의 독단적 추진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체제의 정비	○	조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경관련 행정조직의 정비와 함께 행정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정부 내에 있어서 종합적 조정기능을 거두는 역할을 하게 되어 조경정책의 일관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 또한 위원회, 심의회 및 자문회 등의 체제를 규정함으로써, 조경시책을 올바르게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자치적인 조경위원회 설치 규정도 필요함. ○ 나아가 산업전반의 혼이진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조경교육에 대한 강화를 통해 조경 산업의 입지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시안의 작성이 요구됨.
8. 기금 설치	△	건축이나 토목 등과 같이 건설 산업에서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분야로서 용역 수행을 위한 경비마련에 공공의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친환경 국토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조경정책 추진을 위한 조경발전기금의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의미 있음.
9. 벌칙 규정	×	일반적으로 행정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형 기본법의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기도 하나, 각각의 행정분야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 제도의 목표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이념형이나 정책형 기본법의 경우에는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함.

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⑥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에서는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검토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보고 및 주요 시책에 대한 검증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다. ⑦ 체제의 정비에서는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부서와 기관 및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나 심의회,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⑧ 기금의 설치와 별칙규정에서는 관련 산업의 장려 정책과 별칙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 체계에서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조경기본법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⑨ 기금설치에 관한 구성 체계 포함 여부는 향후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조경관련 기본법들이 채택하고 있는 구성 체계 중 조경기본법에서 채택 가능한 항목들과 그 해당 사항에 대한 유무를 밝히면 표 3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문은 본칙과 부칙으로 나뉘며, 장은 총 6장을 가진 형태로 조경기본법의 구성 체계를 예시할 수 있다(표 4 참조).

한편, 조경기본법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 신익순(2001)의 연구에서는 제1장의 총칙에 더하여 제2장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 제3장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제4장 조경시공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개별법적인 성격이 강하였음에 비하여, 표 4에서 밝힌 본 연구에서의 조경기본법 구성 내용은 보다 기본법적인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앞서 밝히 바와 같이, 현재 종합적인 조경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조경의 가치와 조경에 대한 인식개혁을 요구하는 이념형과 정책형에 속하는 기본법적 특성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한 내용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조경기본법의 구성 체계 예시

본문	장	조
본칙	제1장 총칙	목적
		이념규정
		정의
		책무규정
		타 법률과의 관계 명시
	제2장 조경사업의 열거와 정부의 조치	
	제3장 조경계획의 책정	
	제4장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	
	제5장 체제의 정비	
	제6장 보칙	
부칙		

(2) 내용적 기본방향

조경기본법의 내용적 기본방향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언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타 분야의 기본법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띠기 위해서 타 분야에 종속적인 듯 한 조경분야의 독립성을 표명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일반인 및 관련 전문인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작성할 것→제1장 총칙의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고려
2. 조경분야의 급성장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에 입각하여 일방적인 개발지향개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환경복원과 소생물권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 및 생태분야에 충실히 대처할 것→제2장 조경사업의 열거와 정부의 조치에서 고려
3. 생물을 다룸과 동시에 조경시설물의 표준화가 곤란하고 타 개발위주의 법규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환경윤리 및 풍수지리 등의 인간사상을 도입할 것→제1장 총칙의 이념규정에서 고려
4. 현재 건축, 토목 및 도시계획 등 타 분야와 중복 인정되고 있는 항목들 중 순수조경분야를 확보하기 위한 조경영역확대와 선진외국 조례 및 새로운 식재개념의 기본원칙을 적용할 것→제2장 조경사업의 열거와 정부의 조치에서 고려
5. 현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조경전문용어를 기본법제정을 계기로 하여 학술적·현실적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여 조경기본법 제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립할 것. 특히 조경의 정의와 영역규정을 밝히고 조경가와 조경기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근의 조경업무 영역 확보를 위한 관련 분야와의 법적 경쟁에서 조경영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제1장 총칙의 정의에서 고려
6. 기본법으로서의 논리와 실천적 체제를 갖추기 위해 조경업역 관련 법조문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법령과의 중복관계가 명확히 조정될 것→제1장 총칙의 타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장에서 고려
7. 기본법 형태이므로 기본법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큰 틀만 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방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많이 설정하여 조경의 지역성과 업무수행상의 융통성 발휘를 가능케 할 것→제5장 체제의 정비에서 고려
8. 조경기본법은 국회법인 바, 법률의 위상 상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 등에 유보하는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제1장 총칙의 타 법률과의 관계 및 제6장 보칙에서 고려

3) 조경기본법의 본문체계 및 내용 구성 원칙

조경기본법의 본문체계 및 내용 구성 원칙을 규명하기 위하

표 5. 타 기본법(건축/산림/국토 기본법)의 구성체계

건축기본법		산림기본법		국토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국민의 의무)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제7조(국토계획의 상충관계)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7조(임업의 육성)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제8조(산촌의 진흥)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개폐)	제11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1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2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3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3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4조(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제20조(계획간의 조정)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이용)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제23조(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17조(기획단)				제25조(국토조사)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제5장 삭제	제26조 삭제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27조 삭제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제28조 삭제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제29조 삭제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제20조(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제30조 삭제	
부칙	부칙	부칙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제6장 보칙	제31조(비용부담의 원칙)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제32조(측량법의 준용)	
			제23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 개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제27조(국유림의 관리)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여 조경관련 기본법 중 건축기본법, 산림기본법, 국토기본법의 구성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표 5 참조).

표 5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경기본법의 구성 체계 및 내용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국내 기본법의 기능적 속성을 고려하여 조경기본법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전제로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표 7 참조).

표 6. 조경기본법의 구성 체계 및 내용* 예시

본문	장	조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조경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친환경 국토개발 및 보전)
		제7조(역사보존 및 문화창달)
		제8조(경관 향상 및 보전)
		제9조(지역경관의 창출)
		제10조(조경의 공공성 확보)
	제3장 조경사업의 종류 및 정부의 조치	제11조(조경공간의 정의 및 구분)
		제12조(조경사업의 종류)
		제13조(조경사업자의 요건)
		제14조(조경사업의 추진)
		제15조(조경사업의 사후 조치)
		제16조(정부의 조치)
	제4장 조경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제17조(국가조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국가조경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공정회의 개최)
		제20조(국가조경기본계획의 승인)
제21조(지역조경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부문별 조경계획의 수립)		
제23조(계획 간의 조정)		
제5장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	제24조(조경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제25조(조경정책의 국회보고)	
제6장 체제의 정비	제26조(조경관련 행정부서)	
	제27조(국가조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8조(조경심의위원회)	
	제29조(조경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30조(설계공모의 시행)	
	제31조(조경 산업의 진흥)	
	제32조(조경 교육 및 인재 육성)	
제7장 보칙	제33조(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권한의 위임)	
	제34조(통일대비 조경 사업)	
부칙		

* 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 '조경기본법 제정의 방향 및 시안연구(제)환경조경발전재단, 2008'에 모든 시안과 시행령안이 수록되어 있음.

표 7. 조경기본법의 총칙 기능

기본법의 기능	조경기본법의 기능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국가 차원에서 조경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조경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책의 추진이나 제도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국토개발 및 보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조경분야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타 분야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조경관련제도와 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타 분야와의 행정소송이나 분쟁에 있어서 정책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함.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같은 기본법의 개정은 제도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과 계속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국회의 구성이나 내각의 변화에도 안정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행정의 통제기능	행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조경 분야의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법에서 우리나라 조경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을 성문화하여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조경분야의 정책에 관하여 국가의 기본 인식을 제시함과 아울러 필요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경영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지방분권의 추진기능	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지방 조례와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많이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성과 업무수행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경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기준이나 대강을 정하여야 함.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조경기본법의 기능 속에 국가의 친환경적인 정책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통한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토의 획일화를 지양하여 독특한 지역경관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V. 결론

한국의 조경분야는 40여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민 생활과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전 국토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 속에서 조경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 조경이라는 용어의 중복 사용으로 인하여 법적 단계의 기준들이 법적 효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타 분야와 차별성을 가진 상위단계의 법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조경관련 법규는 허용과 유도적인 측면보다는 규제만을 위한 기능적인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인근 분야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지역과 국가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경 영역이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3. 형식적·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가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정의 기본방향 및 시안을 제시하기로 한 연구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기본법의 제정 자체가 불확실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예측되는 점¹²⁾은 보다 현실적인 후속 연구 및 대책을 통하여 조경기본법의 실행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입법화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즉,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객관성 있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경분야 외 부로부터 조경기본법이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바, 상대적으로 조경분야 내부에서의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객관적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조경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은 추후에 보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 1. 조경공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부임을 밝히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경분야가 토목, 건축, 산업설비 및 환경시설 등의 분야와 같은 위상으로 실정법의 제도권 안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http://www.moleg.go.kr>), 공무원법상의 조경직제 신설 또한 조경분야가 행정부 조직상의 제도권으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병행한 입법부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조경기본법 제정도 필연적인 추세로 판단된다.

주 2. 과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6, 제1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주 3.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공업배치법 참조
- 주 4. 과거 도시계획법 제2, 제6조, 과거 도시공원법 제3조, 제10조 참조
- 주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63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참조
- 주 6. 입체도시계획의 일반적 개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가 지정 가능한 것(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을 의미하며, 법적 개념은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제3조와 제4조에 근간한다(이학동 등, 2000).
- 주 7. 입체도시공원이란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여 각종 시설과 도시 내의 공원을 결합하여 도시 내의 공원비용을 향상시키고,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공원개발 유지비용은 공원과 복합화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충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송지영과 김세용, 2008). 또한 일본의 예를 보면 입체도시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지하이용의 효율화와 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에 대한 도시공원 설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로서 도시공원의 지하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강명수, 2005).
- 주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토도시에 관한 최고의 지위에 있다. 동일한 위상의 계획법인 국토기본법이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서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실재로는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국토와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뒤이어 개별 사업법과 건축·형질변경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조경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 주 9. 건축선설정, 공지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공지의 조정 참조
- 주 10. 본 장에서는 조경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였으나, 지면상의 문제로 결과적인 내용들만을 서술하였다.
- 주 11. 입법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조정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 타 산업 분야에 속한 조경관련 법규의 상충, 선언적인 성격의 한계, 지나친 공공성이 가지는 한계,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한 지자체와 연계된 기본법 내용의 필요성, 조경정책위원회와 타위원회의 충돌, 여타 기본계획과의 상충, 조정 영역 규정 및 자격 요건에 대한 타 분야에서의 반발 등으로 예상된다.
- 주 12. 조경기본법안이 법률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회 접수 후 소관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후에도 정부 이송 후 유관기관들의 검토를 거친 후에 법률로서 공포되는 단계가 진행된다. 실제로 2010년 1월 소관부서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어 그해 9월 제294회 정기국회에서 허친의원 외 9명의 의원들에 의해 조경기본법은 발의되었다. 이후 위원회 심사 단계를 거치고, 2011년 6월 현재 축조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축조심사 단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는 2010년 12월 김진에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현재 축조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건축기본법 개정안과의 상충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4대강 사업 공모 처리 방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기본법이 아직 공공성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조경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은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네덜란드나 핀란드의 법안들과 같이 건축을 중심으로 도시, 조경, 교통, 관련 분야들이 다 모여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현재의 조경기본법안에서는 타법률과의 관계 명시 및 자구의 명확한 표현 등과 같은 검토사항이 소관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관위의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나타난 조경기본법상의 수정·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제정안이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면서 타 법률과의 충돌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경"과 "국토공간"의 정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조경법(제2조)과 건축기본법(제2조), 환경정책기본법(제3조)뿐만 아니라, 조경의 핵

심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도 중복되는 표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2) 조경정책에 관한 “국가조경기본계획” 및 “지역조경기본계획”은 개념상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를 반영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경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경 산업 및 문화가 함께 육성·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 건축주뿐 아니라 개별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서도 함께 연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3) 조경동향 및 조경정책 보고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반여건과 국민적 관심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경정책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수단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 국가조경정책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하여 최근 정부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부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하여 그 설치요건을 제한하는 추세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상황들을 고려하건데, 최근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유사 법률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조경관련 법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보다 현실적인 조경관련 독립법의 제정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헌

1. 강명수(2005) 일본의 최신 녹지정책. 한국조경학회지 33(2): 122-129.
2. 고정희, 김아연, 김연금, 남기준, 박승진, 배정환, 성종상, 이유주현, 이유직, 정옥주, 주신하, 최경민, 홍형순(2007)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파주: 나무도시.
3. 권상준, 조태동, 박용진(2001) 환경·조경학의 이해. 서울: 문운당.
4. 김문모(1990) 대도시 대지내 녹지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영대(1999) 조경설계론. 서울: 기문당.
6. 김평, 김진원, 동재옥(2007) 대지안의 조경을 통한 도시녹화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2(2): 131-144.
7. 김학범(1986) 조경 관련 법규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환경과 조경 제14호.
8. 김한경(2006) 개정 도시공원법의 주요 내용.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문제 제 4월호.
9. 남선영, 윤재옥(2008) 국내·외 옥상녹화 공법 및 제도의 비교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 우수논문집-수상논문 개요집 제4회. pp. 105-108.
10. 박문호(200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의 효과.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문제 4월호.
11.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2. 박을진(1996) 도시공원녹지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박진근(2008) 조망원에서 바라본 경관법의 법적 검토. 한국법정책학회지 8(1): 189-201.

14. 서용철(2007)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7(2): 17-23.
15. 송지영, 김세용(2008) 도시 내 공원 확충을 위한 해외 입체도시공원 사례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533-543.
16. 신익순(1993) 조경 관련 법제 연구: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논문집 14.
17. 신익순(1996a)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과 개발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논문집 제3집.
18. 신익순(1996b) 조경과 관련된 민법상의 내용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17(2).
19. 신익순(1999) 정부기관 내 조경직 설치에 따른 법리와 법제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1): 1-10.
20. 신익순(2001) 조경기본법 제정과 관련 법규의 정비방향. 한국조경학회지 29(5): 115-124.
21. 신익순(2004) 생태복원재료 관련 국내 실정법의 속성 분석.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7(1): 85-96.
22. 안상욱(2003)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조경·환경계의 과제. 환경과 조경 제180호.
23. 오민근(2008) 경관법의 효율적 운용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춘계산학협동학술대회. pp. 31-48.
24. 오정학(1993) 대도시 과밀건축물 주변 소공지(자투리땅) 조경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심지 건축 관련 법규 및 소공지 활용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오희영(1983) 한국조경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조경에 관한 제도 및 법규. 한국조경학회지 11(2): 51-73.
26. 우현영(1994) 신국제공항을 위한 관련 녹지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이대우(1976) ‘공지(open space)’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공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이상석(2008)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 변동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36(2): 99-112.
29. 이유직(1992)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2): 76-89.
30. 이학동, 김경철, 이상준, 강동진(2000)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적용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12월호.
31. 임민택(20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과 친환경건축. 건축 0603.
32. 임승빈, 주신하(2006) 조경계획·설계. 서울: 보문당.
33. (재)환경조경발전재단(2008) 조경기본법 제정의 방향 및 시안.
34. 정종대, 서충원, 박신영(2005) 입체도시계획체제의 현황과 국내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기학술대회. pp. 45-54.
35. 정하광(1995) 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경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3(3): 29-47.
36. 조동우(2006)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건축 0603.
37. 최재용, 이동근, 김은영, 최인태(2008) 녹지총량제의 국외사례 및 국내 적용가능성.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11(2): 104-113.
38. 한승호, 강진형(2006) 생태면적을 제도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제의 성능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10: 169-174
39. Eckbo, G(1969) The Landscape We See. NY: McGraw-Hill.
40. <http://www.moleg.go.kr/>

원 고 접 수 일: 2011년 8월 16일
 심 사 일: 2011년 9월 20일(1차)
 2011년 12월 2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1년 12월 4일
 4 인 의 명 심 사 필